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77
----------	-------

발의연월일 : 2019. 8. 7.

발의자 : 김삼화 · 신용현 · 박주선

채이배 · 오신환 · 이동섭

권은희 · 김수민 · 유의동

최도자 · 김관영 · 이용주

이찬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사반복된 내용으로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목표달성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 -----.
	<u>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u> <u>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